

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조웅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,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.

“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 서울특별시가 설치·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및 장기 연임을 최소화함으로써,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의 위원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,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,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○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가 설치·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및 장기 연임을 최소화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위원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,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